

전공없는 세상은 후계보다 즐겁다!



12회 전국 청년학생한마당
전범재판 대학생법정

주관: 건국대학교 법대학생회 10월 9일-10일 건국대학교 노천극장

주최: 전범재판 대학생법정 준비위(<http://yd.jinbo.net/studentcourt>)

12회 전국청년학생연대방

전범재판 대학생법정

■ 대학생 법정의 제안 배경과 의의 3p

■ 대학생 법정의 절차 및 진행 순서에 대한 소개 6p

참고자료1

■ 과거 전범 재판의 예 10p

참고자료2

■ 아라크 전쟁에 관한 국제전범 민중재판 운동 동향 10p

참고자료3

■ 국제형사재판소(ICC)란 무엇인가? 16p

참고자료4

■ 아라크 전쟁 이후 상황 연표 38p

<http://ydl.jinbo.net>

CONTENTS



12회 전국청년학생연미당 전범재판 대학생 법정

대학생 법정의 제안 배경 및 의의

1. 제안 배경

한국군 이라크 파병을 막아내기 위해 전 민중이 끈질기게 투쟁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8월 28일 비밀스럽게 파병을 강행하고 말았습니다.故 김선일 씨가 피랍되었을 때 '시민 한 사람의 안전 따위가 국가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망발을 한 노무현 정권의 논리가 결국 관철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논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고 김선일씨의 영정사진

그림자처럼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익'이라는 실체 없는 명분으로 인해 한 사람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또한 수많은 민중들의 목숨을 경각에 달아놓고도 파병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정기 국회에서도 정부는 이라크 파병 기간 연장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장 동의안의 근거가 되어야 할 자이툰 부대의 활동은 철저히 보도 통제당

한 채 일체 민중들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한 화약고 같은 곳에 보내진 자이툰 부대의 실상에 대해 민중들은 어떠한 정보 접근 권리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사법부와 입법부 또한 파병 정책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암묵적인 동조를 표하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규정된 '침략전쟁의 부인'은 현실에 있어서는 이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으며, 또한 민중들의 요구 또한 이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진정한 평화와 인권을 바라는 민중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파병정책은 이라크 민중의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반인륜적 행위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평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민중들의 요구를 짓밟는 민주주의의 파괴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개 부, 즉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민의를 거스른 채 국제 인권원칙에 역행하고 있으며, 또 그 어떤 국가 기관도 파병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불법성과 반인도성을 심판하기 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에서 계속되고 있다면 이 부당함을 막는 권리는 바로 민중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정부의 파병정책을 반대하고 이에 불복종하며 이 괴오를 단죄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민중의 권리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권리를 되찾고 사용하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단죄하기 위해 민중들은 세계적으로 이러한 전범들을 심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토론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벨기에, 일본, 터키 등에서 국제적으로 국제전범 민중재판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이스탄불에서 국제전범 민중재판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난 7월 인권단체 등에서 전범 민중재판을 제안한 이후,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12월 민중재판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범재판 대학생법정>은 이러한 국제/국내적인 운동과 동일한 인식에서 제안됩니다. 파병 철회 투쟁이 지난 8월 28일 자이툰 부대 출국 이후 잦아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 법정은 파병 반대 투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동시에 헌법을 위반하고 침략전쟁에 동참한 노무현 정권을 '국제전범으로 규정하는 하반기 반전투쟁에 중요한 흐름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 법정은 또한 정기국회에 예정되어 있는 '파병 기간 연장 동의안' 반대 투쟁과 연계되어 본격적으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투쟁일 될 것이며, 파병반대 투쟁이 자칫 국회 내 대정치권 쟁점으로 협소화될 가능성에 대해 헌법조차 위반하면서 침략전쟁의 동조인이 된 정권에 대한 대중적 심판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면서 투쟁의 올바른 정치적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을 전범이자 민중의 대의를 거스르는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세우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러한 투쟁 속에서만 비로소 한국군 철수와 이라크 학살 점령은 가능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을 300만 대학인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전범이자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세우는 투쟁 그것은 대학생 법정 운동으로 가능합니다.

2 대학생 법정 운동의 의의

대학생 법정 운동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점령과정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전 민중에게 알려내며, 이를 통해 미국의 점령정책과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이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범죄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라크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미국이 실제로는 그 점령과정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명분이었던 이라크의 자유와 민주를 억압하고 학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약이라는 명분으로 파병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 명분 없는 '국약'의 허구성을 알려내고 또한 파병정책이 반인륜적이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노무현 정권을 단죄하는 것이 이번 대학생 법정의 의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전 투쟁을 더욱 확산시켜나가기 위한 계기로써 자리잡을 것입니다. 대학생 법정 운동은 단지 '재판만이 아니라 파병 반대를 위한 운동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추가 파병 정책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불복종을 전개할 것인가, 한국군 철군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은 대학생 법정에 있어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생 법정 운동을 통해 이후 반전 투쟁의 사회적 연대와 국제적 연대의 단초를 마련할 것입니다. 올해 12월로 예정된 국내 민중법정 운동의 대중적 성사와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며 또한 지난 4월 14일 브뤼셀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중법정운동에 기여하는 것이 대학생 법정 운동의 의의가 될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 2주기가 되는 내년 3월 2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전범 국제법정에 대학생 법정 운동과 국내 민중법정 운동, 그리고 세계적인 민중 법정 운동이 그 성과를 가지고 국제적인 반전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12회 전국청년학생연미당 전범재판 대학생 법정

대학생법정의 절차 및 진행순서에 대한 소개

1.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번 <대학생법정>은 배심재판제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배심재판제도는 재판관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제도와는 달리 非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 일정한 선서를 한 뒤에 재판관을 대신하여 다툼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배심재판제도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모두진술과 증인신문, 최후변론으로 구성된 사실심리 과정을 거친 후 배심원들의 평의를 통해 피고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배심원들의 결정을 평결이라고 하며, 유죄평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통 배심원 중 3분의 2 이상이 유죄라고 주장해야만 합니다. 한편 피고가 유죄평결을 받은 경우 재판관은 일정한 양형심리를 거쳐 피고의 형량을 최종결정합니다. 이번 <대학생법정>도 대체로 이러한 배심재판제도의 일반적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제도와 배심재판제도의 주요 차이점

1> 모두진술

모두진술이란 증인신문에 앞서 검사와 변호인이 각자 기소요지와 변호요지를 간략히 진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두진술이 제도화되어 검사가 기소요지를 낭독하고 서류가 아닌 사실의 진술로 구두화하는 것이 형사재판제도와 다른

배심재판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배심재판제도가 실질적 공개재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심리가 서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법정이 단순히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 이상을 지니지 못하는 형식적 공개재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심재판제도에서는 사실의 진술이 모두 구두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판의 첫 단계부터 방청객이 배심원과 동등하게 심리 및 쟁점을 듣고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재판제도와와의 주요한 차이점입니다.

2> 피고인 신문절차의 부재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제도는 피고인 신문을 필수절차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심재판제도에서는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신문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불리한 대목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증인으로 서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할 것입니다.

3> 증거능력의 차이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바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그러나 배심재판제도에서는 어차피 피의자신문조서나 관련서류가 배심원들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조서재판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의 유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진술 대신 목격자의 증언과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공판준비절차에서 상대방이 공판에서 사용할 증거, 즉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전과기록 혹은 정부의 문서 및 물건, 기타 전문가의 증언 등을 미리 확인하는 증거개시절차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재판제도와 배심재판제도의 또 다른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3. 이번 대학생법정의 기소사안에 대한 설명

1> 검사단의 기소요지

① 피고인 노무현 대통령은 UN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침략행위를 자행함으로써 UN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관습법 상의 국내문제불간섭의무를 위반함으로써 UN헌장이 보장하는 주권평등의 원칙을 위반함



▲이라크의 한 노인이 끌려가는 모습

② 피고인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고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반인권적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민중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파괴함
③ 피고인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옹호하기 위한 군사폭력으로서의 이라크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민중의 보편적 인권과 평화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민중에 대한 수탈과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강화함

2> 변호인단의 변호요지

① 대테러전쟁을 단순히 과거 국가 간 전쟁형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이라크 전쟁은 테러행위에 대한 일종의 자위권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UN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략행위라 보기 힘들며, 자위권 행사는 국내문제불간섭의무의 예외대상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위반한 것이 아님
② 이라크 파병 결정은 국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준된 것임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테러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임

**정당성은 이상을
추진하는 수단이**

③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대세일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러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옹호하기 위한 이라크 파병은 국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으므로 정당함

3> 주요쟁점

- ① 대테러 전쟁으로서의 이라크 전쟁을 침략전쟁이 아닌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볼 수 있는가?
- ②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회비준까지 거친 이라크 파병 결정이 민주주의에 역행한 것이라 볼 수 있는가?
- ③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이를 옹호하기 위한 군사폭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4. 대학생법정의 구체적인 진행순서

- 1> 개정
- 2> 인정신문
- 3> 첫 번째 기소내용에 대한 사실심리 ① 모두진술 ② 증인신문 ③ 최후변론
- 4> 두 번째 기소내용에 대한 사실심리 ① 모두진술 ② 증인신문 ③ 최후변론
- 5> 세 번째 기소내용에 대한 사실심리 ① 모두진술 ② 증인신문 ③ 최후변론
- 6> 휴정
- 7> 배심원 평의
- 8> 평결 및 판결문 낭독
- 9> 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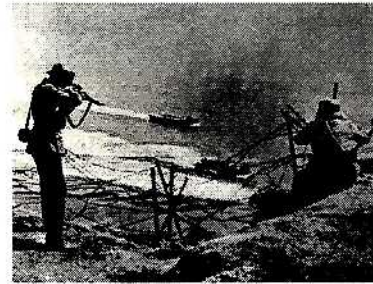


참고자료 1

과거 전범재판의 예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1948년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일본의 도쿄에서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전범재판이 거행된 역사가 있다.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는 독일황제 빌헬름 2세의 책임을 물어 소추를 결정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재판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획기적 사건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모습

전쟁이 발발한 후에 병력에 속한 자 또는 병력에 속하지 않는 자가 전시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 적에게 붙들렸을 때에는 전시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시범죄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립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및 일본이 세계제패의 야욕에서 행한 조직적인 살상·과포·약탈행위에 대해, 연합군측은 양국의 수뇌전범자, 즉 침략전쟁 발발 및 수행과 불법적인 과포·살상에 있어 정치적으로 주동적 역할을 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1943년 모스크바 선언).

1945년 8월 8일 미국 · 영국 · 프랑스 · 소련 사이에는 유럽의 추축국(樞軸國) 수뇌범죄자의 소추 및 처벌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조약에 의거하여 전쟁 범죄자를 재판할 수 있는 국제군사법원이 설치되었다.

일본의 수뇌범죄자의 재판 및 처벌을 위한 극동군사법원헌장은 1946년 1월 19일 태평양지구 연합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포고의 부속서로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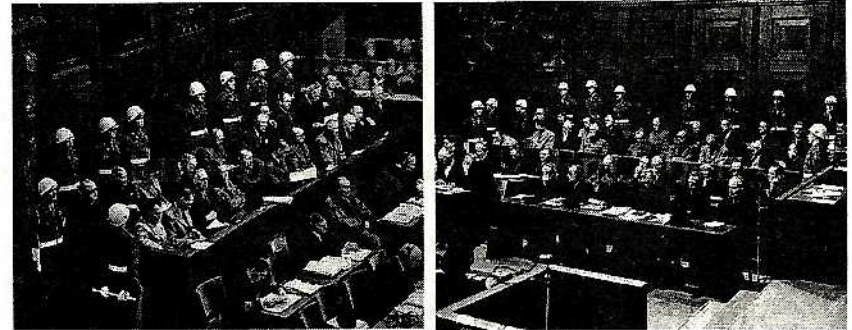
1945년 11월에 시작되어 403회에 걸쳐 진행된 뉘른베르크재판에서는, 전쟁의 공동모의,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등의 항목으로 공군총사령관이었던 H 괴링, 외부장관이었던 J.v.리벤토르프 등 12명에게 사형이 언도되었고, 부총통 R 헤스 등 3명에게 종신금고형이, 그 외의 전범자들에게는 20년 금고, 15년 금고, 10년 금고형이 언도되었다.

1946년 5월에 시작된 도쿄재판에서는 뉘른베르크재판과 유사한 죄목으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7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등 16명에게 종신금고가 언도되었다.

이 두 전범재판은 인류사상 처음으로 침략전쟁을 범죄로 규정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처벌할 수 있었던 국제법에 대해서는, 검찰관과 재판관 모두 전승국의 국민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자료1-1> [사진] 독일 뉘른베르크의 전범재판

유럽에서 2차대전이 끝난 후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자료 1-2> 극동국제군사재판 [極東國際軍事裁判]

극동 군사재판소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극동지역의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하였던 재판.

'도쿄재판'이라고도 한다. 이 재판소는 1946년 1월 19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특별성명서'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총 17조)에 의해 설치되어, (A) 평화에 관한 죄, (B) 통상적인 전쟁범죄, (C) 인도(人道)에 관한 죄 중 (A)에 관련되어 기소된 중대 전쟁범죄자에 대해서만 심리·처벌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평화에 관한 죄를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조약을 위배한 전쟁'을 계획·개시·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한 죄 또는 그 계획·모의에 참가한 개인·단체구성원이 범한 죄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중대 전범자를 A급 전범자

로 규정하였다.

도쿄재판소는 1946년 2월 18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인 D.맥아더에 의하여 W.F.웰 재판장(오스트레일리아)을 비롯한 10명의 재판관(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국·인도·네덜란드·필리핀·뉴질랜드에서 각 1명)과 J.B.키닌(미국)을 수석검찰관(首席檢察官)으로 하는 30여 명의 검찰관이 임명됨으로써 발족되었고, 이에 따라서 1946년 4월 29일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이하 28명의 피고가 A급 전범자로 정식 기소되어, 이 해 5월 3일부터는 이에 대한 심리(審理)가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각 피고인이 선정한 28명의 일본인 변호인단과 2명의 미국측 변호인단이 참가하였다.

법정은 48년 11월 12일, 심리하는 도중에 사망한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나가노 오사미[永野修身]와 정신이상을 일으킨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를 제외한 25명에 대하여 전원 유죄를 인정하여, 교수형 7명, 종신형 16명, 금고 20년 1명, 금고 7년 1명의 형을 선고하였다.

<자료 1-3> “일본 천황을 전범(戰犯)으로 기소하지 말라.”

1946년 도쿄 전범재판

1946년 1월 24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으로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는 워싱턴에 극비 전문을 띄웠다. “천황을 처벌하라”며 세계 여론이 들끓고 있었고, 워싱턴 역시 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경계하고자 했다.

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천황의 전쟁범죄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으며, 그를 처벌한다면 일본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따라 백만 대군의 희생이 예상되는 새로운 전쟁을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종전 직후만 해도 “천황제를 폐지하겠다”고 강경했던 맥아더. 그는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선 것일까.



▲일본 천황 히로히토

히로히토(裕仁)가 도쿄의 미국대사관에서 맥아더를 만나게 그 몇 달 전인 1945년 9월 27일.

35분간 밀담을 가진 뒤 맥아더의 태도는 누그러졌다. 그를 죽이기보다는 손을 잡기로 했다. 소련의 팽창주의를 억지하는 게 급선무였고, 그 방파제인 일본의 재건을 위해 히로히토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46년 1월 히로히토는 살아있는 신(神)임을 부정하는 ‘천황인간선언’을 발표한다.

전쟁 중 베일에 가려 있던 그가 불현듯 대중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는 온화한 표정으로 군국주의자들의 꼭두각시이자, 그 희생양임을 자처하고 있었다.

1946년 5월 3일, 마침내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전범재판)이 열렸으나 히로히토는 기소되지 않았다. 2년 반 동안 심리가 계속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철저히 비켜갔다.

그러나 정작 태평양전쟁을 끝까지 반대했던 히로타 고키(廣田弘毅) 외무대신 겸 총리는 교수대에 서야 했으니! 오죽하면 재판정에서 “역사는 정의의 편이 아니다”는 탄식이 흘러나왔을까.

전쟁은 사랑은 승리와 승리의

전쟁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도 재판에서 "일본에서 천황이 모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법정은 끝내 외면했다.

히틀러, 무솔리니와 함께 2차 세계대전의 3대 전범인 히로히토 그는 패전 뒤에도 44년을 더 일본을 다스렸고, 천수를 누리다 국민들의 애도 속에 갔다.

출처 : [책갈피 속의 오늘] 1946년 도쿄 전범재판 시작/이기우기자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의
기소인이 되어주세요!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원한다면!

부시/블레어/노무현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평화!

gopeace.or.kr 홈페이지를 오세요

전쟁민중재판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소인이 되어주시요



참고자료 2

이라크 전쟁에 관한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의 동향 소개

1. 국제 전범 민중법정 운동의 출발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국제 전범 민중법정을 개최하지는 아이디어는 작년 이라크 침공 발발 이후부터 세계 각국의 평화 운동가들과 단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요구였다. 이러한

요구는 베를린, 자카르타, 제네바, 파리, 칸쿤에서 열린 각종 반전 반세계화 시위와 행사 기간동안 개최된 반전회의에서 기본적인 필요성과 원칙이 토론되었고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 5월 25일 자카르타 평화회의에 참석한 반전평화운동들은 '자카르타 평화선언(Jakarta Peace Consensus)'을 통해 국제 민중법정의 개최를 결의하고 선포하였다. 유럽에서도 버트런드 러셀 평화재단의 주최로 2003년 6월 26/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네트워크 컨퍼런스(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에서 역시 이라크 침공에 관한 국제 민중법정의 개최 여부를 토론하였고,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뒤이어 브뤼셀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연이어 열린 실무 회의와 국제 운영위원회를 통해 터키의 전범재판 추진단이 사무국 역할을 맡기로 하고, 국제 민중법정의 개념, 형식, 목적 등을 결정하였다.

2. 국제 전범 민중법정 운동의 목적

현재 국제 민중법정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세계 평화운동 그룹들이 내세우고 있는 민중법정 추진 운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된다.

첫 째, 이라크 전쟁 기간동안에 미영 연합군과 그 외 동맹군들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반인도적, 반평화적인 전쟁범죄 행위들의 진실을 명확하게 정리된 증거자료로 남기고, 이 전쟁의 추악한 목적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침공을 주도하고 동참한 국가의 정부들과 언론들에 의해 왜곡된 역사적 진실들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 지구적인 반전평화 운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법정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학문적인 논쟁이나 현실적인 사법처리 가능성 등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운동단체들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중적인 평화운동의 계기로 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법정의 형식을 띠는 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에 대한 압력을 통해 향후 전쟁 범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려는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 법정운동을 통해 일방적인 침략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질서와 체계를 세움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이와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민중법정운동은 새로운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의 형성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반전, 반세계화, 평화운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국제 민중법정 운동의 전개 과정

국제 민중법정 운동을 제안하고 추진 중인 국제 네트워크에서는 먼저 각 국가,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반전평화 행사, 연구 위원회나 조사 위원회, 공개 청문회 개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즉, 각 나라별로 국제민중법정 추진을 위한 캠페인, 서명 운동, 문화 행사 등을 벌이거나, 연구 위원회를 구성해 전쟁범죄자들과 그 공범들에 대한 국제법적인 기소 가능성과 새로운 운동 전략, 유엔 등의 국제기구와 국제형사재판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수도 있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이라크 침공 기간에 벌어진 민간인 살상,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피해, 전쟁 포로에 대한 학대, 환경과 문화재 파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증언을 수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공청회나 특정 주제의 포럼 등을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거나 제안된 곳은 미국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 뮌헨, 멕시코, 일본 등이고, 2003년 11월 8일 영국 런던에서는 '이라크 침공과 군사 점령에 관한 법적 심리(Legal Inquiry into the Invasion and Military Occupation of Iraq)' 행사가 열렸으며, 올 1월 인도 뭘바이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에서도 '범죄로서의 전쟁에 관한 세계 법정(World Court on War as Crime)'이 열리기도 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평화운동 단체들이 일찌감치 올 2월 오사카를 시작으로 일본 전역에서 6차례의 공청회와 전범재판을 진행하는 등 국제 민중법정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년 초까지 국가별, 지역별로 공청회, 나라별 법정 개최, 증거 자료 수집, 법정 설립 운동을 벌인 성과를 모아서,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는 2005년 3월 2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최종적인 민중법정이 개최될 예정이다.

4. 각국별 민중법정운동 추진현황

(1) 일본

일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민중법정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미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 여에 걸쳐 '아프가니스탄 국제전범 민중법정(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Afghanistan, ICTA)'을 진행한 경험을 이어 받아서, 2003년 10월 5일 도쿄에서 '이라크 국제전범 민중법정(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Iraq, ICTI)'의 출범을 알리는 개막회의를 시작으로 '이라크에 대한 전쟁범죄자 부시와 고이즈미를 심판하자(Let's Try Bush & Koizumi for the war crimes against Iraq)'란 구호를 내걸고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일본의 민중법정 추진 그룹들은 민중법정의 권한에서부터 침략 범죄,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의 정의와 개인의 사법적 책임 등에 대한 정의와 조직 구성, 공식 언어, 달력까지 꼼꼼하게 규정한 정관을 마련해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기본적인 구성은 판사단, 검사단, 고문단(Amicus Curiae), 실행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이라크 전쟁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공청회 개최를 핵심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ICTI 실행위원회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수집된 내용을 토대로 검사단에서 기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추려내 법정에서 제출한다. 공청회에서는 이라크 민중들, 언론인, 단체 활동가, 학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청취할 수 있고, 증언은 문서화하여 기록집의 형태로 제작되어 그 자체가 법정의 증거가 된다.

(2) 벨기에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2004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신제국주의 세계 질서에 의

문을 던지며(Questioning the New Imperial World Order)'란 제목 하에 브뤼셀 민중법정이 개최되었다. 한 국가나 도시 차원을 넘어선 대규모 민간법정 행사는 사실상 브뤼셀이 최초라고 할 수 있고,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이라크 전쟁 범죄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의 본질을 고발하고 깨뜨리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3) 미국

2004년 5월 8일 '이라크에 관한 국제법정 뉴욕 회의(New York Session of the World Tribunal on Iraq)'가 개최되었다. 뉴욕 회의에서는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과 군사 작전 점령 과정에 저질러진 범죄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고 8월 26일에 다시 '민중이 부시를 심판할 것이다(The People will Judge Bush)'란 제목으로 이라크 전범재판이 개최될 예정이다.

(4) 기타

그 외 코펜하겐(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영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국제 민중법정 운동이 진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준비위(준) 간담회 자료 중



참고자료 3

국제형사재판소(ICC)란 무엇인가?

▶본 문답풀이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NGO연합 (CICC, 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초로 최근의 상황을 더하여 번역, 편집한 것임.

Q-1.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란 무엇인가?

국제형사재판소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유엔 총회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그리고 도쿄재판소와 같은 재판소 설립의 필요성을 이미 1948년에 인식했으며, 그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르완다나 구유고슬라비아에서 극악한 반인도적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 특별재판소의 형태로 전범재판소가 설립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상설 국제재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함으로써 비로소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이 1998년 7월 17일 채택되었다.



▲르완다 학살의 증거들

2000년 12월 31일로 정해진 시한까지 총 139개국이 로마규정에 서명하였으며, 협

약의 규정에 따라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됨으로써 지난 2002년 7월 1일 로마규정이 발효되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및 검사 선출 등을 준비중이며 200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은 2000년 3월 로마규정에 서명하였고, 2002년 11월 8일 국회동의절차를 거쳐 2002년 11월 13일 UN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83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Q-2.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나 구유고 전범재판소, 르완다전범재판소 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주로 국가들간의 분쟁을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서,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이와는 달리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아울러 기존의 르완다와 구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와는 달리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 효력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즉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에 명시된 범죄를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도 독자적인 기관이 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는 절대 면책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재판소는 미래의 폭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기존의 국가사법제도를 보충하는 의도로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각 국의 법원이 해당범죄를 조사 또는 기소하지 않으려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는 각 국의 영토 내에서 저질러지거나 해당 국민들이 저지른 범죄를 해당 국가가 조사하고 기소하게 하는 촉매역할을 하게 된다.

Q-3.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 범죄들을 다루게 되는가?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을 다루게 된다. 이러

한 관할 범죄의 유형은 보다 명확한 용어정의를 위해 로마규정의 각 조항을 통해 자세히 정의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집단살해죄(Genocide)**는 국민, 민족, 인종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를 갖고 저질러진 살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야기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강간·강제임신·성적 노예화 등의 중대한 성폭력, 강제실종 및 인종차별 등.

■ **전쟁범죄(War crimes)**는 국제 및 국내무장전투에서 대규모로 저질러진 범죄로서 1949년 제네바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및 기타 전쟁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내전투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관습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50년간 국제적 분쟁이 아닌 국내분쟁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의 인권 유린이 발생했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Q-4. 침략행위, 테러리즘 및 마약거래 등의 범죄도 다룰 수 있는가?

로마회의에 참여했던 많은 국가와 비정부기구(NGO)들 사이에는 침략범죄(crimes of aggression)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지지가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침략범죄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만한 정의를 내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 결과, 로마규정에 이 범죄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나, 침략범죄의 정의, 그 구성요건 및 관할권 행사의 조건들에 관하여 검토회의를 통해 당사국간의 합의에 이루어질 때까지 침략범죄에 관한 관할권을 국제형사재판소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헌장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침략범죄가 실제로 저질러졌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로마규정은 침략범죄에 관한 최종 내용이 유엔헌장의 관련 조항과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테러리즘과 마약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임사항(mandate)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해 상당한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은 테러리즘의 정의에 대해 로마회의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마약범죄를 조사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업무부담이 과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다. 각 국 대표들은 당사국들이 향후의 검토회의에서 위의 범죄들을 포함시키도록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Q-5. 성범죄도 기소할 수 있는가?

그렇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로마규정은 강간·성적 노예화·강제매춘, 강제임신 및 강제불임 등의 성폭력 범죄가 민간인을 상대로 하여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행해질 때 이를 인도에 반하는 죄의 구성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가 국제 또는 국내의 무장 충돌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쟁범죄로도 간주된다. 르완다와 옛유고슬라비아에서, 강간과 성폭력은 테러를 가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그들이 속한 특정 민족 집단 및 사회 전체의 여성들을 모욕하고 비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특별재판소는 강간과 기타 성폭력 사건을 기소했을 때 피해자들이 때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를 두려워하는데다가 심지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또다시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피해자와 증인들이 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는 증인과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및 안전조치, 상담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피해자 및 증인 담당부(Victims and Witnesses Unit)'를 둘 예정이다.

Q-6.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국제형사재판소는 원상회복, 보상 및 사회복귀 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원칙을 수립한다. 즉, 국제형사재판소는 피해자의 손해, 손실 및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구체적인 배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또한 재판소의 관할권 하에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탁기금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부과한 벌금 및 몰수를 통해 징수된 현금 및 기타 재산이 포함될 수 있다.

Q-7. 국제형사재판소는 언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되는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소급되지 않는다. 즉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이 발효된 시점인 2002년 7월 1일 이후의 범죄만을 취급할 수 있으며, 자국 영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국가 또는 피의자의 국적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인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 대부분의 경우 관할권 인정에 관해서는 각 국가의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위와 같이 자동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은 국제법에 있어 주요한 진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전쟁범죄의 경우,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발효 후 7년 동안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사건이 회부된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은 임시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사건이 회부된 경우에는 로마규정의 당사국이나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형사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Q-8. 국제형사재판소가 국내법원의 관할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보충적 관할권이란 무엇인가?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의 관할권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관할권을 '보

충'하는 것이다. 즉, 각 국가의 법원은 자국 관할권내의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데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보충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는 당사국의 국내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활동을 개시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소요 또는 분쟁 등으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재판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現정권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을 의미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특정사건을 재판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즉 재판적격성(admissibility)의 문제는 로마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로마규정은 재판적격성에 대한 결정이 자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국내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를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및 이해관계국은 로마규정의 당사국이나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또는 해당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Q-9. 범죄혐의자를 어떻게 기소, 체포, 그리고 인도하는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사건을 개시할 수 있는 주체는, 로마규정 당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검사이며,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예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범죄자가 일반적으로 권력에 의하여 비호를 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관하여 로마규정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및 기소, 공판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한 당사국의 협력의무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자국민의 인도를 국내법률로 금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나, 로마규정 협상 당시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자국의 국내법이 범죄 혐의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형사재

판소에 대한 인도(surrender)는 타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인도(extradition)와는 다른 것으로 간주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몇몇 국가들은 자국의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으로 하여금 국제형사재판소의 지원 요청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Q-10. 검사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권한남용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로마규정 협상 당시, 수석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찬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수석검사가 정치적 관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수석검사는 접수된 정보의 중대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국 정부, 유엔기관, 정부간 기구(IGO), 비정부기구(NGO) 또는 다른 신뢰할 만한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구두증언을 접수할 수 있다.

로마규정은 수석검사의 독자적인 기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칙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수석검사는 자체수사를 실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국가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수사를 실시하기 전 수석검사는 수집한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예비재판부(Pre-Trial Chamber)로부터 수사개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의자 및 해당국가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또는 사건의 재판적격성(admissibility)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나 기소를 1년 뒤로 연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유예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될 수 있다. 이러한 유예조치는 평화조성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노력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 또는 기소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석검사는 로마규정 당사국총회(Assembly of States Parties)를 통해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다음과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석검사는 높은 도덕성 그리고 형사사건의 기소와 재판에 있어 고도의 능력과 풍부한 실무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수석검사의 자격상실에 관한 문제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상소재판부(Appels Chamber)에서 결정된다. 또한 로마규정 당사국총회는 수석검사가 중대한 부정행위 또는 로마규정에 따른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수석검사를 해임시킬 권한을 갖는다.

수석검사선출결과 >> http://www.un.org/law/icc/elections/results/prosecutor_results.htm

Q-11. 재판관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국제형사재판소는 최고의 전문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갖춘 18명의 재판관을 두게 되는데, 이들은 각 국가에서 최고의 사법직에 임명될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재판관의 인선기준에 있어, 18명 중 적어도 9명은 형사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최소 5명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 조예가 깊어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다. 또한 로마규정 당사국의 국민만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동일 국가의 재판관이 2인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02년 9월 3일부터 개최된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확정된 재판관 선출절차에 따르면, 각 국은 18표의 투표권 중 남녀 재판관 후보를 각각 최소 6명씩 선출해야 하고, 5개 대륙에서 각각 최소 3명의 후보에 투표를 해야 한다. 각 후보들은 2/3 이상을 득표해야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최종 선출된다. 재판관 선거는 2003년 2월에 열리는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재판관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법적 기능에 방해가 되거나 그들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이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재판관은 해임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안전장치는 재판관의 독립성, 청렴 및 능력을 보장하고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관 선출결과 >> http://www.un.org/law/icc/elections/results/judges_results.htm

Q-12. 국가원수, 고위 정부공무원 또는 군지휘관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할 수 있는가?

그렇다. 로마규정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로마규정은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정부 또는 의회의 구성원, 선출된 대표자 또는 정부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지위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감형을 부여하는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각국의 국내법 특히 헌법규정과 상충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각 국은 각국의 헌법이론과 현실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거나 헌법규정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충돌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군지휘관 역시 직접적으로 행한 범죄 또는 그의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군대가 행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진다. 또한, 그의 군대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당시 정황상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행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발생한다. 이외에도, 사실상의 군지휘관으로 활동한 민간인 역시, 범죄가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질 것이라는 정보에 대해 미리 알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무시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Q-13. 범죄 혐의자가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국민일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는가?

그렇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로마규정의 당사국인 경우, 또는 비당사국이라 할지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임시로 인정할 경우, 그

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해당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 경우에는 기소가 가능하다.

Q-14. 피고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로마규정은 피고인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인권기구들에 구현되어 있는 관련기준들도 확대시키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위로 기소된 개인은 공개 심리, 공평하게 진행되는 공정한 심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추가장치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소추기관과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제도가 있다. 이러한 심사과정은 경미하거나 남용적인 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와 소추로부터 무고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로마규정은 무죄추정(the Presumption of innocence)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법의 현 추세를 고려하여 사형제도는 채택하지 않았다. (참고로, 국제형사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최고 30년의 유기 징역 또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범죄행위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 재산 및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수 있다.)

Q-15. 비당사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는가?

로마규정은 비당사국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해 명시적인 일반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로마규정의 당사국이나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기존의 국제법에 의거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및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이러한 재판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는 범죄 혐의자들을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 타국가로 인도해야 한다. 1973년 12월, 유엔 총회는 결의안 3074호를 통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사, 체포, 인도 및 처벌에 대한 국제협조원칙'을 채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이들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양자적·다자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비당사국이라 할지라도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임시로 관할권을 인정한 경우, 국제형사재판소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 경우에도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 로마규정 비당사국들로 하여금 국제형사재판소의 지원요청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Q-16. 국제형사재판소가 각 국의 군대 또는 평화유지군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게 되면 국가들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리지 되지 않을까?

이미 기존의 국제법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국 국민이 위 범죄의 희생자가 된 경우 해당국가가 범법자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리와 법적 의무 등을 마련하고 있다. 로마규정은 이러한 기존의 조약법(treaty law) 원칙들을 침해하지 않으며, 기존의 국제법에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권리나 법적 의무도 생성하지 않는다. 비당사국의 협조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이며 비당사국에 대해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또는 차량을 상대로 한 의도적인 공격행위를 관할 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평화유지군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공격행위는 전쟁범죄로 간주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인도에 반하는 죄로도 간주될 수 있다.

Q-17. 최근 미국이 자국의 평화유지군에 대해 기소면책을 부여하도록 하는 쌍무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각 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2001년 12월 31일 로마규정에 서명한 미국은 의회의 비준을 계속 미뤄오다가 급

기야 지난 2002년 5월 서명 자체를 철회한다고 선언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불참을 선언했다. 미국은 자국의 군인, 안보정책담당 고위관리 등을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와 기소로부터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반국제형사



▲부시는 전범이다

재판소 정책은 지난 2002년 7월 12일 '비당사국의 평화유지군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를 1년간 면책한다'는 결의안(1422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된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미국이 각 국에 요구하고 있는 면책특권 협정이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면책특권협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법원에서의 기소 및 수사조차 명확히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범죄인에 대한 불처벌(impunity)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하는 죄·전쟁범죄 등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시키고 이를 통하여 그러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루마니아,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등 13개국이 미국과의 면책특권협정에 서명하였으며,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지하는 많은 국가와 비정부기구들은 이 국가들이 해당협정을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미국인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기소면책 허용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Q-18. 한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적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이 항목은 한국정부 비준 전 상황에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로마규정은 국제법상 조약이므로 조약을 가입함에 있어서는 국내법적 장애가 무

엇인지를 살펴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헌법제6조) 국내법이 로마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로마규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어(소위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 반드시 국내법적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충되는 국내법이 헌법인 경우에는 조약을 헌법에 우선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 헌법 이외의 국내법률과 상충되는 경우라도 법적용의 명확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로마규정을 가입함에 있어 국내법과 상충된다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로마규정 제27조 1항이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원수도 국제형사재판소의 관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우리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조항(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과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로마규정의 위 조항이 우리 헌법과 상충된다고 보아 로마규정의 가입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가. 만일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헌법개정의 복잡성에 비추어 당분간 우리나라는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는 헌법개정 없이도 로마규정을 비준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규정상의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장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대부분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내란, 외환의 죄에 해당할 것이고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자체에서 탄핵절차를 통하여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직을 파면하여 일반인과 똑같은 지위로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있어 헌법개정 없이도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통령의 신병을 인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Q-19.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비준을 전후로 한국은 어떤 국내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로마규정을 비준한다고 해도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로마규정의 가입을 전후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로마규정의 보충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내이행장치와 당사국의 협력의무를 이행할 국내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규정상의 관장범죄는 당사국의 국내사법절차에 의해 처벌되지 않을 때 혹은 국내사법절차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보충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은 반드시 로마규정의 관장범죄를 우선 국내사법절차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 로마규정을 비준하게 되면 한국은 국내 형사절차에서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침략범죄 등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형사법은 이러한 범죄를 적절히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이들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이유로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법률의 내용은 위의 범죄유형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로마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시효부적용원칙, 보편적 관할의 원칙,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원칙 등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Q-20.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http://minbyun.jinbo.net/icc/icc-02.htm>에 로마규정 국문본이 있습니다.

자료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minbyun.jinbo.net/icc/>)

<자료3-1>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 인권단체 공동성명(7.1)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강요하는 반인권적 불처벌협정을 거부해야 한다!

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세기의 역사는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로 인한 수백만 희생자들의 죽음과 고통으로 얼룩져왔다.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자행한 이들은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왔다. 불처벌은 이러한 범죄들을 조장해 왔다.

나치의 유대인대학살이 일어난 지 60년이 지나고, 르완다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의 끔찍한 집단살해가 있는 지 10년 남짓 지났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범죄가 수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설립 1주년을 맞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이러한 범죄를 점차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은 채택 후 5년 남짓 동안 전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다수의 국가가 현재 비준절차를 밟고 있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반대하는 미국의 전세계적 책략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새로이 선출된 18명의 재판관과 검사가 헤이그에 있는 재판소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오늘은 또한 미국이 최근 각국에 강요해 온 불처벌협정 체결의 최종시한이다. 작년 한해동안 전세계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대사들은 각국 정부에게 불처벌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며 엄청난 압력을 가해왔다. 어떠한 미국인이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로 기소되더라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지 않겠다는 불법적인 약속을 강요한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국내법정에서도 조사 혹은 기소할 것이라고 보장하지도 않았다. 미국법에서 이러한 범죄들을 범죄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내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조사 혹은 기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각국이 불처벌협정을 거부할 경우 군사적, 경제적 혹은 다른 형태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불처벌협정에 서명한 48개국 중 5개국에서만 의회 비준절차를 통과하였다. 협정에 서명한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에서 강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인권단체들은 현재 각국 의회 의원들에게 불처벌협정 비준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불처벌협정 체결을 미국정부로부터 이미 요구받은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협정의 체결에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불처벌협정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본 정신과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협정이다. 더구나 명예로운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송상현 교수)을 선출한 국가가 불처벌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러한 미국의 불처벌협정 체결강요를 강력하게 거부해야 한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훼손하려는 책략이 실패로 돌아간 데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정작 재판소의 활동 사실은 가려져 왔다. 콜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등 로마규정에 비준한 국가들에서 제출된 끔찍한 형태와 규모로 발생한 범죄들에 대한 광범위한 기소가 재판소 검사국에 의해 검토 중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자국의 동부지역에서 내전 당사 양측에 의해 대규모의 범죄가 자행되고 있던 시기에 국제형사재판소에 비준하였다. 이는 재판소가 평화와 법치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제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는 이러한 범죄의 수사를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에 요청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 졌다.

무엇보다도 국제형사재판소가 인류에 끼친 가장 큰 영향력은 비준한 당사국들이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를 조사·기소하거나 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직접 들어와 활동할 것을 감수할 책임을 1년 전 2002년 7월 1일부터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준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도 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3년 7월 1일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새사회연대 /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 안산노동인권센터 / 울산인권운동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참고자료 4

이라크 전쟁 이후 상황 연표

2001년 9월 11일

미국 대폭발 사건(9·11 테러사건) 발생

2002년 1월

미국 정부, 북한·이라크·이란 '악의 축' 규정

2003년 1월 18일

미국 내에서 50여만 명 반전시위 개최

2003년 2월 15일

국제 반전공동행동 개최(대학로)

2003년 3월 1일

민족자주 반전평화 촛불대행진 개최(광화문)

2003년 3월 13일

노무현 정부, 긴급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 전쟁 발발 시 한국 비전투병 파병 방침 결정
반전평화 촛불대행진 개최(광화문)

2003년 3월 17일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이라크에 48시간 최후통첩 발송

요구안은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후세인 정권 하야

2003년 3월 20일

오전 5시 반(현지 시각), 바그다드 남동부 지역에 미사일 폭격 개시.
이라크 전쟁 발발(작전명, Freedom of Iraq)
이라크 내 미사일기지·포병기지·방공시설·정보통신망 등 3회 공습
이후 광화문에서 매일 촛불 집회 개최
주말을 비롯한 계속된 이라크 전쟁 규탄 집회 개최
민중운동단체, 파병 동의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 투쟁 진행.
3월 23일 국회에 상정된 파병 동의안은 민중들의 투쟁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함
민중운동 단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마다 국회 앞에서 파병 동의안 저지 투쟁 전개.
로비 잠거 투쟁, 한강 교공 투쟁 등의 선도적 투쟁 전개.

2003년 3월 22일

이라크 남동부 소재, 이라크 제 2의 도시인 바스라 점령.
이후 계속적인 바그다드 공습. 대통령궁 등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폭격 자행.

2003년 3월 26일

서울 지역 대학생, 미 대사관 진격 투쟁 전개.
이후 전원 연행, 이 과정에서 학생 1인 실명 위기.

2003년 3월 29일

전국민중대회 개최(전국 동시다발, 수도권은 종묘)

2003년 4월 2일

파병동의안 국회통과(제적 270명, 참석 256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8명, 기권 9명)

2003년 4월 4일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 바그다드 진격.
사담 후세인 국제공항 장악.
300만 대학인 동맹휴업 및 대학생 행동의 날 개최(청년학생 반전위원회 개최)
이를 전후로 각 대학에서는 전쟁 반대 대학 총투표 및 동맹휴업을 결의, 진행함.

2003년 4월 7·8일

연합군 바그다드 시가지로 진입.
만수르 주거지역 내 비밀병커 집중 공격

2003년 4월 9일

영국군 바스라 임시지방행정부 구성

2003년 4월 10일

미국군 바그다드 완전 점령.

2003년 4월 14일

미군 후세인 고향인 북부 티그리트로 진입.
사실상 전면전적인 이라크 전쟁 종전.

2003년 4월 17일

파병선발대 성남공항을 거쳐 출국

2003년 4월 30일

한국군, 성남공항을 거쳐 출국.

2003년 5월 1일

정당없는 전쟁은 승리보다 중립이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주5일 근무제 도입! 파업관련 손배가압류 철회! 노동3권 보장! 경제자유구역법과 개방정책 중단! 미국의 한반도 전쟁 음모 중단!' 전국 노동자대회 개최(대학로)

2003년 5월 31일

전국학생투쟁연대(준) 발족식 및 반전평화 Open Space 개최(평화문)

2003년 6월 9일

미군 '사막의 전갈'이라는 작전명으로 대규모 소탕작전 개시

2003년 6월 13일

미 장갑차 사건 1주기 및 반전평화 대회 개최(시청)

2003년 8월

이라크에서 차량폭탄 사건으로 120명 등의 사상자를 내는 등 본격적인 저항활동 개시.
이라크에서 이른 바 '지옥의 문'이 열림.

2003년 11월 1일

이라크 저항세력, '저항의 날' 선포. 이라크 전역에서 저항세력과 연합군의 무력 충돌.

2003년 11월 30일

이라크 티그리트에서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오무전기 직원 2명 피살 2명 부상.
이라크 전 이후 최초의 한국인 사상자 발생.

2004년 1월

인도 뭄바이에서 4차 세계사회포럼 개최.
전쟁과 세계화에 반대하는 전 세계 민중들의 투쟁과 논쟁의 장.

정당없는 반인륜전쟁

2004년 3월 20일

이라크 전쟁 1주기 세계 반전공동행동 개최(대학로)

2004년 4월

팔무자를 비롯, 이라크 전역에서 유혈사태 발생.

2004년 5월

미군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 폭로 이후 반미 여론이 세계적으로 들끓게 됨.

부시, 반미여론에 불만을 가진 채 사과.

이라크 무장세력, 니콜라스 버그 살해. 이후 6월까지 무장세력 몇 명의 민간인을 납치, 살해함.

2004년 6월

김선일 씨 이라크 저항세력 '알 자르카위'에 의해 피랍.

23일, 외교통상부 김선일 씨 사망 사실 공식 확인

2004년 7월

인권단체를 비롯, 시민사회단체에서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제안

이후 계속된 회의를 거쳐 올 12월 전범재판 민중법정 개최 예정

2004년 10월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 개최 (예정)

전범재판 대학생법정 개최